

■ 정책 동향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추진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5월 12일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 진입규제는 운용대상 펀드가 공모인지 사모인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하나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한 개의 펀드 내에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모두 투자 가능), 공모펀드 운용사, 즉 공·사모펀드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투자대상 자산 별로 인가 단위가 구분됨). 그리고 최초 진입 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자산만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로만 진입이 허용되고, 이후 업력과 평판이 검증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한하여 공모펀드 운용사로의 전환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 중 5년 이상의 업력과 5조 원 이상의 펀드 수탁고를 보유한 회사만 종합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이 허용되고,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을 엄격하게 운용하여 종합자산운용사의 분사 및 타 운용사 인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적 인가정책에 대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기존 자산운용사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기대가 높아져서 자유로운 퇴출 등 구조조정이 저해되었고, 종합운용사 진입이 어려워져 상위권 운용사들의 시장지배력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1그룹 1운용사 원칙은 자산운용사의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진입규제를 완화(인가→등록)한 자본시장법의 최근 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증권회사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사모펀드 운용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에 대한 제한적 인가정책은 유지하되, 사모펀드 운용사의 공모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사모펀드 운용사도 일정한 업력 및 수탁고 요건만 갖추면 종합자산운용사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종 공모펀드 운용요건 폐지).

종합 자산운용사의 경영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하여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곧바로 폐지하고, 공모펀드 운용사에 대하여는 업무 특화 인정범위를 인가 단위별로 한정하지 않고 한 인가단위 내에서도 인정함으로써(가령, 증권펀드 인가 단위 내에 active 펀드 및 passive 펀드, 특자펀드 인가 단위 내 인프라 펀드 및 기타 실물펀드 등), 복수 공모펀드 운용사 보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단계). 이와 같은 1단계 진전 및 정착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는 것(2단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화 인가정책 개선방안은 세부 과제별로 2016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보도자료